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4. 1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가. 제안이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일부 자활기금의 용도 확대
 - 2)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존속기한 5년 연장
 - 3) 상위법 개정 관련 조례정비 등
 - 4)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조문정비 등

3. 검토보고 (이주현 전문위원)

- 본 조례는 생활이 곤란한 지역주민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3년 제정된 조례임.
-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일부 추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5.30일 만료되어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근거하여 2023.5.30일 까지로 5년 연장하여 조례제정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반영, 사문화 조항의 삭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등 조례를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